
학칙 개정(안) 사전 공고



명 지 대 학 교

「고등교육법 시행령」 제4조 3항 및 「명지대학교 학칙」 제71조에 의거하여 「명지대학교 학칙」 개정사항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개정(안)을 공고합니다.

2023년 11월 20일

명지대학교 총장

▣ 의 견 제 출 ▣

「학칙 개정(안)」에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3년 11월 26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기획조정실 기획예산팀(enaka74@mju.ac.kr)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- 가. 개정(안)에 대한 의견(찬성 및 반대 의견과 그 이유)
- 나. 소속, 성명 및 연락처

※ 전화문의 : 규정담당자(031-330-6704)

의안번호	1
발의부서	교육지원처

명지대학교 학칙 개정(안)

1 추진 배경

1. 개정 사유

교육부의 예비군 참여 학생 학습권 보호 요청에 따라 예비군 동원·훈련 참여 학생에 대한 불리한 처우를 방지하고 학습자료 제공 등 학습권을 보장하기 위하여 관련 내용을 학칙에 반영하고자 함

2. 주요 내용

학칙에 조항 신설[제9조의2(예비군 훈련에 따른 부리한 처우 금지)]

3. 신·구조문 대비표

현 행	개 정(안)	비 고
<신 설>	<p>제9조2(예비군 훈련에 따른 불리한처우 금지)</p> <p>① 「예비군법」 제6조에 따라 예비군 훈련을 받은 학생에 대하여 훈련 기간 동안 출결, 성적처리 및 학습자료 제공 등에 있어 불리하게 처우할 수 없다.</p> <p>② 예비군 훈련으로 인해 수업 결손이 발생하는 경우 수업 보충 등 학생 학습권을 보장한다.</p> <p style="text-align: center;">부 칙</p> <p>이 학칙은 2023년 12월 1일부터 시행한다.</p>	조신설